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2. 24.(목)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 (2011-13-029)

○ 석제범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서식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동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 디지털 컨버터 등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② 지원대상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안내(안 제3조, 제4조)
- ③ 지원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신청서류로 함(안 제5조)

※ 지원신청서에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당초안 (10. 12. 29 위원회 보고)	수정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DTV코리아 의견)
<p><별지 제1호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에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약서 포함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의 정보 제공기관 : 행정안전부, 한국방송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컨버터 지원시 '방문불요' 선택 가능 ○ 주거형태 선택란 연립·빌라 	<p><별지 제1호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에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약서, <u>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u> 포함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의 정보 제공기관 : 행정안전부, <u>보건복지부</u>, 한국방송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불요' 선택란 삭제 ○ 주거형태 선택란 연립·다세대

- ④ 지원센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하되,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⑤ 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당초안 (‘10. 12. 29 위원회 보고)	수정안 (행정안전부, 한국전파진흥협회 의견)
③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센터는 지원 대상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센터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⑥ 지원업무 추진과정에서 유료방송 가입이나, 디지털TV 보유 사실 확인되는 등 지원 부적합 사유 발견 시 지원 중지(안 제8조)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2011-13-030)

-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에스케이마케팅엔컴퍼니(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8천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위반내용

- ‘08. 10월부터 ‘09. 12월 사이에 OK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 354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동의 받지 않았으며,
-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위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② 처분내용

- 시정명령(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행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되, 공표문안, 매체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과징금 1억 8천 8백만원 부과

3) (주)케이티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에 관한 건 - (2011-13-031~051)

○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09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내용 중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주)케이티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회계규정 위반의 주요 유형

- (자산) 초고속인터넷 관련 자산을 시내전화 자산으로 분류 등 160건
- (수익) 전기통신사업 요금수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류 등 29건
- (비용)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시내·공중전화 등으로 분류 등 113건
- (기타) 서식작성 오류 및 단순 집계 오류 등 58건

② 처분내용

-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
- 과태료 부과(오류발생 금액과 위반건수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

<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내용 >

대상 사업자	부과금액
SKT, KT (2개사)	1,000만원
SK브로드밴드 (1개사)	700만원
CJ헬로비전, SK네트웍스, 큐릭스 (3개사)	500만원
(구)LGT, (구)LG데이콤, (구)LG파워콤, (구)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드림라인, KT파워텔, 세종텔레콤, 드림씨티방송, 씨앤엠,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기남방송, 한국케이블텔레콤 (15개사)	300만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에 관한 건 - (주)지에스강남방송, (주)지에스 울산방송 - (2011-13-052)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5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의거, (주)한국유선미디어의 (주)지에스강남방송 및 (주)지에스울산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 및 최대주주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각각 승인 및 인가하기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① (주)지에스강남방송에 대한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인가 내용

< (주)지에스강남방송의 주식 변동 내역 >

변경 전		변경 후	
		(주)한국유선미디어	84.88%
(주)지에스홈쇼핑	84.88%	(주)현대홈쇼핑	4.77%
(주)현대홈쇼핑	4.77%	유진투자증권(주)	3.99%
유진투자증권(주)	3.99%	기타(33명)	6.36%
기타(33명)	6.36%		

② (주)지에스울산방송에 대한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인가 신청 내용

< (주)지에스울산방송의 주식 변동 내역 >

변경 전		변경 후	
		(주)한국유선미디어	99.8%
(주)지에스홈쇼핑	99.8%	유창통신(주)	0.2%
유창통신(주)	0.2%		

< 승인 및 인가 조건 >

1. (주)한국유선미디어가 제출한 (주)지에스강남방송 및 (주)지에스울산방송에 대한 2015년까지의 투자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2. (주)한국유선미디어는 (주)지에스강남방송 및 (주)지에스울산방송이 변경승인 및 인가일 이후 향후 3년간 차입(지급보증 및 자산담보 포함)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주)한국유선미디어는 (주)지에스강남방송 및 (주)지에스울산방송의 2010년 말 확정되는 이익 잉여금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고, 2011년부터 매년 계획한 투자를 집행한 후 발생하는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실시하여야 함
4. (주)한국유선미디어는 기존 차입금 이외의 추가적인 차입을 하지 않아야 함
5. (주)한국유선미디어가 제출한 (주)지에스강남방송 및 (주)지에스울산방송에 대한 지역채널 운영 계획(제작비·인력·방송장비 투자 확대) 및 시청자 권익 증진방안을 이행하고, 방송 및 통신 서비스 품질을 본건 주식취득 이전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함
6. (주)씨앤엠이 제출한 2015년까지의 투자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7. (주)씨앤엠이 제출한 향후 3년간의 부채비율 개선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8. 변경승인 및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제2항 및 제7항의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수정 적용할 수 있음
9. (주)한국유선미디어는 매년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변경승인 및 인가조건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단, 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은 (주)씨앤엠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5) 무선호출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건 - 서울이동통신(주) - (2011-13-053)

-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서울이동통신(주)를 무선호출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함.

< 주파수할당 심사결과 >

신청법인	심사사항별 평가점수			총점 (100점)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5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	
서울이동통신(주)	38.238 (76.475)	20.202 (80.808)	19.133 (76.530)	77.572

※ 허가요건 : 심사사항별 60점 이상과 총점 70점 이상 획득

6)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건 - (주)한국모바일 인터넷 컨소시엄 - (2011-13-054)

-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WiBro용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을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심사결과 >

심사사항		배점	심사결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50점	32.978점 (65.956)
	2. 재정적 능력	25점	17.157점 (68.628)
	3.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25점	16.410점 (65.640)
	총 점	100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32.680점 (65.360)
	2. 재정적 능력	25점	17.157점 (68.628)
	3. 기술적 능력	25점	16.800점 (67.200)
	총 점	100점	66.637점

※ 허가요건 : 심사사항별 60점 이상과 총점 70점 이상 획득

사.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6. 폐 회 (12:05)